

드리면서, 2000년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載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俞載漢 전문위원 유제한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나누어 드린 유인물 4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과년도수입 종량제봉투판매 및 폐기물 운반수수료 1,448만 7,000원과 국고보조금 5억 5,98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취로사업비가 당초 예정했던 예산보다 1,818만 7,000원이 감액 보조됨으로 감소가 된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6억 4,394만 1,000원으로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보호비와 취로사업비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 및 가정도우미 운영비이며, 취로사업비 시·구비 보조가 당초 예정 세입예산보다 909만 3,000원이 감액된 추경예산액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생활복지국 소관 총세입액은 12억 1,82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
=====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 고 (증 감)	산 출 기 초
과년도수입	1,014,683	1,000,196	14,487	
과년도수입	1,014,683	1,000,196	14,487	○ 종량제봉투판매 및 폐기물 운반수수료 14,487
국고보조금	6,388,480	5,838,648	559,832	
국고보조금	6,388,480	5,838,648	559,832	○ 자활보호생계보호비 556,619 ○ 취로사업비 △18,187 ○ 결식아동급식비 21,400
시·도보조금	7,562,052	6,918,111	643,941	
시·도보조금	7,562,052	6,918,111	643,941	○ 자활보호생계보호비 278,309 ○ 취로사업비(시·구비사업) △9,093 ○ 취로사업비(순수시비사업) 37,896 ○ 결식아동급식비 10,700 ○ 가정도우미 운영비 26,129
계	14,975,215	13,756,955	1,218,260	1,218,260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61억 5,254만 4,000원으로 기정예

산 379억 4,294만 7,000원 보다 16.2%가 증액된 440억 9,549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 세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1,157만 2,000원, 가정복지예산 2,300만원, 노인복지 7,318만 6,000원과 청소년유아복지 13억 6,112만 9,000원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보호 14억 1,610만 9,000원 등 31억 4,6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05억 5,1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555만 5,000원 보다 약 18%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아복지의 자체사업인 시설비 독서실 신축의 예산 내용에 있어서 재산의 관리는 업무분야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신길5동 청사 옥상에 구립독서실을 증축하기로 하여 총무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동청사에 사회사업비를 편성한 것은 잘못 된 것으로 보며, 구립독서실 설립 예산에 있어서 독서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9개소도 몇 개소를 제외한 이용자수가 평소 1일 10명에서 15명으로 6개월간 평균 1일 35.8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과연 운영의 효과가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독서실이 없다고 하여 임차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복지관을 순차적으로 건립할 때 독서실을 3, 4층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상적경비의 민간이전 민간·보육시설에서 아동 간식비 지원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삭감의 이유로는 민간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운영자의 생활수단이며 봉사가 아니라는 것과 또한 보육어린이들로부터 보육비를 받고 있으므로 민간시설보육원에의 지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산취득비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근무초소 냉방기는 전년도 예산에서 삭감했던 예산이며, 저소득 주민보호의 일반운영비중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회의수당은 위원회구성조례가 제정되기 전 예산을 요청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